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폐지이유

-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. 시행)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대통령령)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 : 없음.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 제2호의 별정직공무원(이하 "지방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용,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조 석 희
	담 당	김 현 주
	담 당 자	김 준 호 (480-6774)